

서울마포음악창작소 시설 대관규약

[시행 2021.06.01.]

■ 운영 공간

1. 공연시설 : 라이브홀 (공연장)
2. 녹음시설 : 스튜디오 (녹음실)
3. 작업시설 : 밴드작업실1~2, 개인작업실1~2(윈도우기반), 개인작업실3~4(맥OS기반),
개인작업실5(맥OS기반, 확장형)
4. 부대시설 :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 사용 날짜 및 시간

1. 운영시간 : 10:00~22:00
2. 휴일 : 1) 신정(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전국단위 선거일
4) 창작소의 점검 또는 공사일

■ 대관 신청 방법

1. 공연시설, 녹음시설, 부대시설, 전체시설 대관
 - 1) 이메일 사전 접수(현장 접수·납부 불가)
 - 원하는 시설의 대관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작성 후 창작소 대표 이메일로 제출
(seoulindieplatform@naver.com)
 - 공연시설, 부대시설, 전체시설 대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녹음실 대관신청서는 **3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 ※ 대관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이 경우 신청 당일 결제를 포함한 모든 절차 완료 필수
 - 2) 담당자 승인
 - 신청 3일 이내에 사용 승인 여부 메일로 안내 (휴관일·주말 제외)
 - ※ 대관승인여부는 창작소 운영방침 부합 여부 및 대관자의 사용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별표 1호 참고
 - 3) 대관 승인 후 3일 이내 재단 계좌에 대관료 전액 입금 필수
 - ※ 카드 결제의 경우, 현장 방문 결제만 가능
 - 4) 대관계약서 작성 및 체결
 - ※ 공연시설, 전체시설은 대관 계약서 작성 필수, 기타 시설은 대관료 납부로 계약 같음

2. 작업시설 대관 (개인·밴드 작업실)

1) 홈페이지 사전 접수

- 전화 예약 및 당일 현장 예약·취소 불가
- 매달 말일 홈페이지에 예약 스케줄 공개 (2개월 단위 스케줄 확인 가능)
- 대관 자격: 뮤지션 등급의 회원만 이용 가능
- 자격 충족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뮤지션 등급으로 레벨업 신청
- ※ 홈페이지 내 레벨업 게시판에 신청글 작성, 자작곡 음원 2곡 이상 첨부 필수

2) 홈페이지 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 시간을 선택하여 대관 신청

3) 대관료 결제

- 온라인 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결제

■ 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 (※ 별표 3호 참고)

1. 공연시설 대관료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공연	라이브 실황 녹음	비 고
일반 대관료	770,000/8시간	110,000/1회	※ 최소 사용 시간 8시간 ※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이더라도 1시간 대관료로 적용 ※ 공연 및 철수 시간이 오후 10시를 초과할 시 일반 대관료의 50%를 초과 대관료로 적용
할인 대관료	385,000/8시간		
추가 사용료	일반대관: 220,000/1시간 할인대관: 110,000/1시간		

① 환불 신청: 유선으로 환불 신청 후 환불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현장 환불 불가)

② 환불 처리: 환불 수수료 차감 후 결제했던 방법으로 환불처리

- 무통장입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제출
- 카드 결제: 결제한 카드 지참 후 현장 방문하여 결제 취소

③ 환불 수수료: 환불금액은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 (23시 59분 기준)

- 사용일 14일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사용일 7일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의 50% 반환
- 사용일 6일 전 ~ 대관 당일 취소 : 대관료 반환 불가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으로 재난 주관 기관에서 이동 및 집합을 제한한 경우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이용 취소, 혹은 창작소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납부 대관료 중 미사용 대관료 전액 반환

※ 라이브 실황 녹음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녹음 비용 전액 반환

④ 환불처리 소요 기간: 환불신청 후 약 10일 소요 (휴관일·주말 제외)

2. 녹음시설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기 본	라이브홀 추가 대관	비 고
일반 대관료	110,000/1시간	22,000/1시간	※ 최소 사용 시간 1시간 ※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이더라도 대관료 100% 적용
할인 대관료	55,000/1시간	11,000/1시간	

- ① 환불 신청: 유선으로 환불 신청 후 환불신청서 이메일 접수 (현장 환불 불가)
- ② 환불 처리: 환불 수수료 차감 후 결제했던 방법으로 환불처리
 - 무통장입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제출
 - 카드 결제: 결제한 카드 지참 후 현장 방문하여 결제 취소
- ③ 환불 수수료: 환불금액은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 (23시 59분을 기준으로 계산)
 - 사용일 **7일**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사용일 **3일**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의 50% 반환
 - 사용일 **2일** 전 ~ 대관 당일 취소 : 대관료 반환 불가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으로 재난 주관 기관에서 이동 및 집합을 제한한 경우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이용 취소, 혹은 창작소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납부 대관료 중 미사용 대관료 전액 반환
- ④ 환불처리 소요 기간: 환불신청 후 약 10일 소요 (휴관일/주말 제외)

3. 작업시설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대관료	비고
밴드작업실	15,000/1시간 (15% 마일리지 적립)	※ 최대 사용 시간 1일 10시간
개인작업실	일반 4,500/1시간 (15% 마일리지 적립)	※ 최대 사용 시간 1일 10시간
	확장형 6,000/1시간 (15% 마일리지 적립)	※ 최대 사용 시간 1일 10시간

- ① 환불 신청: 대관 전일까지(오후 6시 기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신청 (현장 환불 불가)
- ② 환불 처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 후 카드사별 정책에 따른 환불
- ③ 환불 수수료: 환불금액은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
 - 사용일 **전일 오후 6시 이전** 취소 시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사용일 **전일 오후 6시 경과** 후 취소 시 : 대관료 반환 불가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으로 재난 주관 기관에서 이동 및 집합을 제한한 경우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이용 취소, 혹은 창작소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납부 대관료 중 미사용 대관료 전액 반환

※ 환불 시 발생 마일리지 취소, 기존 보유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사용한 마일리지 반환
- ④ 환불처리 소요 기간: 홈페이지 취소 신청 후 즉시 환불

4. 부대시설(다목적홀)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기 본	비 고
대관료	110,000/1시간	※ 최소 사용 시간 2시간 ※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이더라도 대관료 100% 적용

- ① 환불 신청: 유선으로 환불 신청 후 환불신청서 이메일 접수 (현장 환불 불가)
- ② 환불 처리: 환불 수수료 차감 후 결제했던 방법으로 환불처리
 - 무통장입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제출
 - 카드 결제: 결제한 카드 지참 후 현장 방문하여 결제 취소
- ③ 환불 수수료: 환불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 (23시 59분을 기준으로 계산)
 - 사용일 14일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사용일 7일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의 50% 반환
 - 사용일 6일 전 ~ 대관 당일 취소 : 대관료 반환 불가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으로 재난 주관 기관에서 이동 및 집합을 제한한 경우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이용 취소, 혹은 창작소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납부 대관료 중 미사용 대관료 전액 반환
- ④ 환불처리 소요 기간: 환불신청 후 약 10일 소요 (휴관일/주말 제외)

5. 전체대관(촬영, 경연대회, 리셉션 등)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기 본	비 고
전체 대관	330,000/1시간	※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이더라도 대관료 100% 적용

- ① 환불 신청: 유선으로 환불 신청 후 환불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현장 환불 불가)
- ② 환불 처리: 환불 수수료 차감 후 결제했던 방법으로 환불처리
 - 무통장입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제출
 - 카드 결제: 결제한 카드 지참 후 현장 방문하여 결제 취소
- ③ 환불 수수료: 환불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 (23시 59분을 기준으로 계산)
 - 사용일 14일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사용일 7일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의 50% 반환
 - 사용일 6일 전 ~ 대관 당일 취소 : 대관료를 반환 불가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으로 재난 주관 기관에서 이동 및 집합을 제한한 경우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이용 취소, 혹은 창작소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납부 대관료 중 미사용 대관료 전액 반환
- ④ 환불처리 소요 기간: 환불신청 후 약 10일 소요 (휴관일/주말 제외)

■ 대관료 할인

1. 내 용: 음악 창작활동을 주업으로 하면서 고정수입이 없거나, 고정수입이 있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예술가나 영세 사업자에 대해 창작소 공연시설 및 녹음시설 대관료 할인
2. 적용기준: 가, 나, 다 중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혹은 영세 사업자
가. 연소득 기준

구분	연소득	제출서류	비고
개인	2,200만 원 미만	주민등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증빙 시점 기준 근로소득자: 5월 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 기준, 5월 1일 이후는 전년도 소득 기준 종합소득세신고자: 7월 1일 이전 은 전전년도 소득 기준, 7월 1일 이후는 전년도 소득 기준
개인사업자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보험료완납증명원	
법인사업자	1억 원 미만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보험료완납증명원	
공통	신고 사실 없을 시	국세청 발행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한 경우 1)발급불가 해당화면 캡처본 2)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발급하여 문서 첨부

나. 서울마포음악창작소 홈페이지 뮤지션 등급 회원

- 서울마포음악창작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뮤지션 등급으로 레벨업 신청 및 승인

다. 사업자의 경우 영세소속사(레이블), 비영리법인만 해당

- 1인 소속사, 영세소속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 증빙 필수 (홈페이지 주소 인증 등)

3. 신청 방법 및 절차

- 1) 대관신청서 작성 시 대관료 할인 여부 체크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 2) 증빙서류 심사 후 대관료 할인 승인 여부 통보

4. 대상 제외 사항

- 1) 최근 5년간 창작소 시설을 대관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 규정이나 규약을 위반했거나, 1개월 이상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
- 2) 사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및 기타 세금 납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나 법인

5. 주의사항

- 1) 이미 할인된 대관료를 납부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후에 본 규약의 내용을 위반했거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밝혀질 경우 차액 추가 납부 필수
- 2) 추가 납부를 통보받은 후 대관을 취소할 시, 기 납입 대관료 반환 불가

■ 마일리지

1. 내 용: 작업시설을 이용한 대관자에게 납부액의 15%를 마일리지로 지급
2. 사용방법: 홈페이지 내 작업실 대관 신청 시 마일리지로 결제
3. 주의사항
 - 1)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환급 불가
 - 2) 마일리지와 현금결제수단을 동시에 사용하여 대관신청 불가

- 3)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생성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이후 자동 소멸,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예고·통보는 하지 않음
- 4) 운영 주체 변경 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마일리지 자동 소멸

■ 이용수칙

1. 시설 정원

- 1) 공연시설 : 좌석 50석 / 스탠딩 70명 (정원 초과 시 추가 입장 절대 불가)
- 2) 녹음시설 : 최대 10인
- 3) 밴드 작업실 : 최대 10인
- 4) 개인 작업실 : 최대 3인

2. 시설 및 장비 이용수칙

- 창작소의 모든 시설·장비는 외부 반출 불가
- 대관자의 장치와 설비 설치 시 사전협의, 철거 및 원상복구 필수
-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 폐기물 처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재단에서 정한 손해액 배상 필수

3. 시설 이용 금지사항

- 창작소 내부에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유해물, 폭발물, 폐기물 등)
- 지정한 장소 외 폐기물 배출 및 취사·취식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란, 오염, 흡연, 위협 등)
- 흡연실 수용인원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최대 3명)
- 이용 시간 및 공간, 장비사용 등에 대한 승인 범위 외의 위반행위
- 창작소 유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의 안내 및 이용수칙에 반하는 행위
- 창작소 이용목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행위

■ 주의 사항

1. 입장권은 대관료 완납 이후 운영자의 승인 또는 동의 후 발매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발행 불가
2. 타인에게 대관 양도 불가
3. 대관 일정 변경 불가. 다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천재지변, 사고, 가족상) 대관 일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변경 요청
4. 시설 대관 예약 후 미이용 시, 차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광고·홍보물 제작 시 창작소의 CI를 적용하고, 재단이 지정한 서식에 맞추어 제작
6. 시설 대관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이후 대관 불가
7. 위의 시설 대관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관한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

서울마포음악창작소 대관운영 시행 세칙

[별표 제1호] 대관 승인 및 거절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창작소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및 장비 관리 유지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창작소가 소유한 각종 악기, 장비 등에 대한 활용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대관 진행이 어려운 경우
- (4) 음악 창작소 고유 목적사업과 무관한 초·중·고교생, 대학생 중심의 동아리 발표회 또는 어린이 대상의 음악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등의 행사
-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일반 기념행사
 - (가) 종교 모임, 예배, 예불 등 신앙 행동 모임 또는 유사 모임
 - (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모임, 토론회, 결의대회 또는 유사 모임
 - (다) 상품, 서비스 판매가 목적인 설명회, 교육 또는 유사 모임
 - (라) 친목 도모 목적의 사교성 행사나 친족, 동창, 동호회 모임 또는 행사 등
- (6) 대관 규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창작소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그에 준하는 전력이 있는 경우
- (7) 국가, 지자체의 법령이나 본 규약을 위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8) 대관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나. 공연이 아닌 강연이나 교육의 형태라도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의 목적으로 대관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 (1) 음악 관련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 강연
- (2) 음악, 문학, 미학, 인문 관련 도서의 저자 강연 또는 영상 상영회
- (3) 공연예술계의 저명한 예술가나, 실적이 좋은 유망주 또는 신진 예술가가 주최하는 기자회견, 간담회, 강연 또는 영상 상영회

다. ‘촬영’ 목적에 관한 대관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촬영’은 대관자가 그 행위의 결과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공중과 케이블 및 각종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려는 목적을 가진 영상 기록행위를 뜻하며 아래의 목적을 포함한다.
 - (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심층취재 제작 등
 - (나) 뮤직비디오, 광고, 캠페인 제작 등
 - (다) 대규모 촬영팀 혹은 스태프가 동원되는 촬영 활동
 - (라) 기타 ‘촬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작 활동
- (2) ‘촬영’ 대관 시에는 대관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창작소 전체를 대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 (3) 아래의 목적에 대해서는 ‘촬영 대관’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가) 공연, 행사 및 기타 연습 등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 짧게 이루어지는 ‘취재’, ‘보도’,

‘홍보’ 목적의 일반 기록, 인터뷰 등

(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아티스트 자체 기록 활동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대관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2)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관료를 미납한 경우
- (3) 과다한 입장권 발행으로 관람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 (4) 대관 진행 과정 중 대관자에 의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거나, 대관 시설 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힌 경우
- (5) 창작소가 요구하는 대관 운영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역 포함)
- (6)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7) 대관자가 무단으로 대관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 (8) 기타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마.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창작소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입장권을 무단으로 발행할 경우
- (2) 대관자 임의로 진행한 대관 취소, 내용변경으로 창작소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 대관으로 인한 사후 납부금을 1개월 이상 미납하여 연체한 경우
- (4) 촬영 대관으로 진행하지 않은 촬영물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각종 매체를 통해 송출한 경우
- (5) 본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표 제2호] 대관료 특례

가. 다음의 대관 건에 대해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서울시, 마포구의 중앙·자치 정부 기관 또는 각 의회 기관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 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행사
-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연 또는 행사
- (3) 재단 사업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공연, 행사 등

나. 대관료 면제에 해당하는 대관 사항은 주최 또는 후원 기관의 별도 양식에 따른 문서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항목에 대해 대관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실비 개념의 시설사용료, 인건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한다.

[별표 제3호] 대관료 반환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창작소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납부 대관료 중 미사용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 (2) 위 항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이로 인한 대관 취소 시 창작소는

대관자가 부담한 대관료 외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 (가) 폭우, 폭설, 태풍, 지진, 폭염, 한파 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재난 주관 기관에서 이동 및 집합을 제한하거나 교통을 통제할 경우
 - (나) 집회, 시위, 소요, 사변 등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 (다)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지역 단위 이상 범위의 정전, 단수, 통신 단절 등의 경우
 - (라)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해 창작소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용 불가하여 대관 개시일 이전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마) 국가 또는 지역 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집합금지, 시설폐쇄 명령 등으로 인해 창작소 시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바) 기타 창작소와 대관자가 상호 합의하에 인정되는 불가항력의 경우
- (3) 국가적 행사, 마포구 또는 창작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기납부 대관료 중 미사용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